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2. 6. 22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손문규 의원

나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2년 6월 1일
- 회부일자 : 2012년 6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2012년 6월 14일

-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책복지위원회 손문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사업별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, 기금에 대한 자문·심의 기능의 강화를 통해 기금 운용·관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사업범위(용도)를 종전 사업비에서 임대료까지 확대
- 자활공동체 등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한도 상향 조정 및 상환조건 조정
 -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한도 : 1억 → 2억
 - 전세점포 임대자금 상환조건 : 5년 거치 5년 상환 → 최장 6년까지
- 사회보험료 지원에 따른 대상가구 및 지원근거 명시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명시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홍범희)

- 자활기금의 용도와 지원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,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사업비”를 “사업비 및 임대료”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그 밖에 도지사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 등의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.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자활센터 등 자활 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 등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,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, 최대 3회까지(최장 6년) 연장해 줄 수 있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1억원 이내로 한다. 단, 자활공동체의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본문 중 “자활공동체가”를 “자활공동체 등이”로 하며, 제2호 “사업자금”을 “자금”으로 한다.

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2(사회보험료 지원)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,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, 지원기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9조 제목 “(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)”을 “(이차보전)”으로 하고, 제1항 중 “사업자금”을 “자금”으로 하며, “제8조 제3항”을 “제8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융자받은 자활 공동체 등의 융자금 상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용도) 충청북도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 기관의 <u>사업비 지원</u> 4. (생략) 5. (생략) <p><신설></p>	<p>제3조(기금의 용도) 충청북도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<u>사업비 및 임대료</u>.....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과 같음) 6. 그 밖에 도지사가 수급자 및 차 <u>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
<p>제8조(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8조(자금대여) ①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 등의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.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②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1억원 이내로 한다. 단, 자활공동체의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</p> <p>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 등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,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, 최대 3회까지(최장 6년) 연장해 줄 수 있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자활공동체 등이</p> <p>...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자금.....</p> <p>....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의2(사회보험료 지원)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신설></p> <p>제9조(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)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%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의2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	<p>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,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, 지원기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</p> <p>제9조(이차보전) ①자금.....제8조 제4항..... </p> <p>제11조의2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다음 각 호의 사항.....충청북도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.....설치·운영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.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.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.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15조의2(중앙자활센터)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.

1.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사업
2.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
3.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 공동체의 기술·경영 지도 및 평가
4. 자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·운영
5.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
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
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.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제26조의4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자활공동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(補填)
2.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3.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
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
5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6.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

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
가. 자활공동체가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

나.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

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
9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
10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

제26조의5(기금의 운용·관리 등) ① 기금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운용·관리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, 기금재무관, 기금 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.

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9조(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) ① 시·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시·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·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
3.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4.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·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